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916 ysfnb@daum.net

Gate 9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0.07.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21

# [핫 게이트 99치킨]

##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영성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식회사 영성에프앤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 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 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96-3

대표전화: 1811-7533 가맹사업부전화: 070-4910-5550

팩스번호: 031-321-707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핫 게이트 99치킨	· 게이트 99치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96-3					
(조)여서세고에비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영성에프앤비	2019.10.29	2019.10.29	한무진	1811-7533	031-321-7070		
	법인등록번호	134511-04	16998	사업자등록번호	802-81-01627		

#### 2. 특수관계인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유	한무진 핫케이트	경기도 용인시 최	인구 양지면 양대로	96-3	
대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0.15	한무진	1811-7533	031-321-707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핫 게이트 99치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핫 게이트 99치킨	치킨을 통째로 튀기는 옛날통닭제품과 순살 치킨의 장점을 극대화 한 브랜드로 친서민적 제품으로 차별화함
상 호	핫 게이트 99치킨 OO점	
상표(서비스표)	Gate 99	등록번호 40-1726531 (2021.05.11)
광 고	Gate 99 Chicken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65,145	504,148	-239,003	405,675	-176,723	-139,391
2022년	284,633	657,052	-372,419	499,091	-144,345	-133,415
2023년	253,058	729,138	-476,079	216,916	-104,375	-103,66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한무진	대표이사	2021.06 ~ 현재	㈜영성에프앤비대표	가맹사업총괄 직영점 운영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mark></mark> (명)	직원수(명)
八石	상근	비상근	역원구(경)
2023년 12월 31일	1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Gate 99	영업표지 등	출원 2020.04.21 등록 2021.05.11.	출원번호 40-20200066817 <b>등록번호</b> 40-1726531	(주)영성 에프앤비	2031.05.11

<sup>\*</sup> 별첨5 참고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핫 게이트 99 치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0. 5. 18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5월 16일)

#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핫 게이트	복희수	2020.05~ 2021.0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256번길 73
㈜ 영성에프앤비	99치킨	한무진	2021.6~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96-3

#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핫 게이트 99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첫 계약트 99시간	치킨	순살후라이드, 옛날통닭후라이드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1.			022.12.3	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1	10	1	10	9	1	6	5	1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경기	7	6	1	6	5	1	5	4	1
강원	1	1	0	2	2	0	1	1	0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1	1	0	1	1	0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2	2	0	1	1	0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	4	0	2	1	10
2022	10	4	0	5	0	9
2023	9	0	0	4	0	5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4를 확인하십시오

6.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sup>및</sup> 매출액(	_	연간 <sup>:</sup> 매출액(		비고
, ,	구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5	94,721	8,625	143,746	13,400	45,310	3,560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4	해당없음			
강원	1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 ① 상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산정 하였습니다.
- ② 지역의 가맹점이 5개소 미만인 지역은 지역별 평균매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③ 당사 가맹점 별 매출액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핫게이트99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핫게이트99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영업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	946일(31개월)

자세한 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핫 게이트 99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향후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11,27]쪽을 참고 하십시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수단 기간 미포함)			비고	
, =	, ,	716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34
합계						
광고						
판촉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용인대로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4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영성에프앤비의 핫 게이트 99치킨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핫 게이트 99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전수 시	<ol> <li>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 부여</li> <li>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li> <li>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li> </ol>
교육비	1,650	계약 체결 후 즉시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후	1인 교육 추가 시 33만원 1인당 추가
총계	4,950	_	_	_	

2) 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 배상액등과 정 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교육비	1,650	부가세포함
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합계	7,9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물품의 품목은 [12,16-18]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기준 : 33제곱미터,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4,200~ 43,000	3,420~ 4,300			
필수설비(정착물)	가맹본부	10,000 ~12,000	1,000 ~1,200	별도사항	별도사항	권 장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16,500~ 20,000	1,650~ 2,000	별도사항	별도사항	권 장
최초 공급 상품		3,300~	330~	물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4,400	440	1일 이전	미공급시	권 장
익스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4,400~ 6,600	440~ 660	별도사항	별도사항	권 장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를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3㎡당 330천원(부가세포함)의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간판공사, 외부공사, 가구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도시가스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 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75%(가맹본부): 25%(가맹점사업 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 :0%(가맹점사업 자)	_	_	_	가맹점모집광 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POS사용료	권장업체 또는 자율	직접구매/렌탈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_	_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 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_	_	_	"VII. 가맹본부 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에 원" 조	대한 지 항목 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 사자의 유 등 을 여협의	귀책시 날고려하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단위: 천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연1회 이상	문의: 관리팀 (1811-7533)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연1회 이상	문의: 관리팀 (1811-7533)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가맹비는 없습니다. 단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의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급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실시 후	추가교육 필요시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양수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 사실증명서(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1일당 이십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원·부재료, 완제품 등 필수 품목 리스트 (상세 리스트와 내용은 별첨1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단위: 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애	비고
2023.12.31.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3년 기준

2)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통마리 옛날통닭		1회 위반: 구두 경고	기 네노버크
순살 후라이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이상 이바. 서며 기적으그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조각 치킨 후라이드	에 잠들 전 배월 구 없	[3외 이경 귀만: 계약	가능 함
양념류 순살제품		해지	/10 Б

시즈닝 순살제품
똥집튀김
닭발제품
기타 사이드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 요구(2회이상) 3회 이상: 계약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미니통닭	4,900		
순살 후라이드	13,900	홈페이지 공지, 유선,	2023. 12월
조각닭 치킨 후라이드	13,900	팩스,서면	기준
똥집 튀김	9,900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와 판매가격이 변경될 때에 미리 권장 판매가격을 가격통보방법을 통하여 알려주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상품 및 가맹본부가 통지한 상품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월만 집중 탐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핫 게이트 99 치킨'와 동일한 업종 (치킨, 치킨호프)	핫 게이트 99 치킨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이상	<ul><li>–.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li><li>–.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li></ul>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 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

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 니다

구분	주문방법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에 경기(영·ᆹ급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4.7	15.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 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 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예→②, 아니 <u>오</u> →⑦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예→④, 아니 <u>오</u> →③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예→⑤, 아니오→A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예→B, 아니오→®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1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소 제3양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제37조 제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일반적인 해지사유

- 1.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9.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의 사유로 원.부재료 공급 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의제기 없이 변경 가격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즉시해지사유 (가맹계약서 제38조2항)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 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창업비용이 계획대로 원할히 준비되지 못할 때		4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임대한 장소에서 영업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4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후 사망, 질병, 체포 등 신변의 급격한 변동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45조 1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이내에 동의 여부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구인이 당사가 정안 - 가맹점 운영 기준을 - 즈스하 거		문의 1811-7533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양도.양수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 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 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 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33조 제6항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필요 (유상)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필요 (유상)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필요 (유상)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과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핫 게이트 99 치킨'과 동일한 업종 (치킨, 치킨호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문의 1811-75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1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이상/년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이상/년	가맹본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고 서 건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七	P분 광고 성격		가맹점부담	군음 결사	H177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u> </u>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신세 /F벵召	
광고	가맹점모집+상품 광고	광고비의 75%	25% (가맹점 수로 균분)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 제시(명세서)	사업자의 50% 이상의 반대시 실시 않음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24/21 ( 8 24/21)		
판촉 행사	팜플렛, 전단지 등의 기획비용은			행사 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해당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하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제작비용	<ul> <li>가맹점부담액 제시 절차를 거친 후</li> <li>→ 가맹점의 행사 전체</li> <li>참여 결정 → 행사 가맹점사업자</li> <li>종료후 최종 70%이상 동의</li> <li>분담금 확정 시 전체 적용</li> </ul>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 금 확정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2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되면 가맹본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0평,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_	
상담	<ul><li>전화 상담</li><li>사업내용상담</li></ul>	_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ul><li>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li></ul>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 의	D-30	8p-9p 참조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점포실측/설계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5~2(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24~5(20일)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이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 인하여가방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정상적인 영업에현저한 지장을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어 공사비용 (장비·잡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 채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비용 수 등 등 어 에 된 보고 기 에 가는 지 하 대에 대부 대 의 의본 가 개 의 가 바 이 바 이 부 대 지 다. " 방 지 다. " 가 만 한 점 한 포 한 그 이 의 방 된 가 가 맹본부 가 를 환경 우 나 이 부 급 지 의 분 한지 하 하 하 에 나 보 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O가 대	○ 경 된 이 가 부 책 는 로 이 () 해 영 도 돼 우 맹 부 중 여 에 례포 선 부 년 에 본 의 없 유 후 료의 · 양 화 경 가 부 액 잔 간 비 는 한 선 부 년 에 본 의 없 유 후 료의 · 양 화 경 가 부 액 잔 간 비 는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시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1811-7533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1811-7533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제도는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등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수시	_
특별(보수) 교육	필요시 내용 통보	이론,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실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4시간 (1일8시간*3일)	1,650 (1인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1인 교육 추가 시 마다 33만원 추가됨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필요시
특별(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박	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동백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110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7개월 (43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5,653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연도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811-753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공급하는 물품(원 · 부재료)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2 표준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3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4 2023년 12월 31일 가맹점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5 지식재산권 등록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